

CM용역 계약서

1. 계약명 : 원익IPS동(C동) 인테리어 공사 CM용역
2. 공사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외 2필지
3. 용역 시작일 : 2013년 1월 1일
4. 용역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5월 31일
5. 계약금액 : 일금 일억이천이백오십만원정(₩122,500,000), 부가세 별도
6. 대금의 지급
 - 가. 선급금 : 없음
 - 나. 기성부분금 : 월별 계약금액의 25%를 4개월동안 현금지급
 - 다. 인테리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에 따른 CM용역비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용역계약 일반에 의하여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2통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가진다

2013년 2월 일

도급인

상호 :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

성명 : 이문용



수급인

상호 : 신원종합개발(주)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39-1

성명 : 조용래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 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 “을”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설계변경에 관한 업무지원 등 계약관리
2.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3.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공정관리
4.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품질과 환경관리
5.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안전관리
6. 기타 해당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제3조[용역기간]

① 기본설계도서 작성일부터 준공일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제4조[기타]

① “을”은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의사소통 및 조정을 한다.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상 호 : 信元綜合開發 株式會社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39-1 103-213 대표이사 조용래 (110111-0350712)
------------------	--	---

상기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아이포타 조성사업의 원익IPS동(C동) 인테리어공사 CM용역계약

업무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에 사용하기에 제출합니다.

서기 2013년 3월 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39-1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용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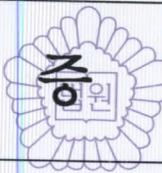


주식회사 원익IPS 대표이사 귀하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

인감증명서



법인등록번호 : 110111-0350712



상호 : 信元綜合開發 株式會社

본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09, 103동 213호

대표이사 조용래

(650103-1091011)

관할등기소 :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 발행등기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02월 15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000원 영수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발급 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508550151754152100311103241702B9E9C0BAC1D619681220 20

발급확인번호 QANV-YMZU-DIG9

- 1/1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05-81-17479

법인명(단체명) : 신원종합개발(주)

대표자 : 조용래

개업년월일 : 1983년 10월 01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0350712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39-1 103-213

본점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39-1 103-213

사업의종류 : 업태 건설업
설계·설정업
설비설치업
설비제작·판매업
설비수리·보수·점검업
설비설치·설비설정업
설비설계·설정업
설비제작·판매업
설비수리·보수·점검업
도매

[종목] 토건
건축
조경공사
전기배관난방소방시설공사
포장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무역

(별지 출력)

교부사유 : 대표자 정정

원본내지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부(✓)

2011년 04월 12일

수원세무서장



국세청

등기번호	015475
등록번호	110111-03507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제출용]

상 호	信元綜合開發 株式會社	변경 등기
본 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09, 103동 213호	2012.10.23 도로 명주소 2012.10.31 등기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wc.co.kr)에 게재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10.05.29 변경 2010.06.14 등기
------	---	--------------------------------

1주의 금액	금 500 원	2009.05.05 변경 2009.05.06 등기 2009.05.07 원인 일자 경정(착오발 견)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 주	2009.05.05 변경 2009.05.06 등기 2009.05.07 원인 일자 경정(착오발 견)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변경 연 월 일
		등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100,680,278 주	2009.05.05 변경
	100,680,278 주	2009.05.06 등기 2009.05.07 원인 일자 경정(착오발 견)

목	적
1.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2. 주택건설업	
3. 건축자재 판매업	
4. 토목 건축업	
5. 전기 공사업	
6. 원예업	
7. 수출입업	
8. 섬유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9.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10. 주문주택사업	
11. 지정문화재 수리업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00002120950784053100311108245301B9DABFEBC1F819670917 1 발행일:2013/03/08

발급확인번호 4758-AANM-GIGD

- 1/5 -

대법원

등기번호	015475
------	--------

12. 통신시설 공사업
 13. 가스설비 공사업
 14. 철강재 제조 및 설치공사업
 15. 조경공사업
 16. 포장공사업
 17. 준설 및 간척사업
 18. 항만공사업
 19. 플랫설계, 시공, 제작, 감리, 설계용역업
 20. 자원(석재, 골재, 해양, 산림, 지하수)개발사업
 21. 해외종합건설업
 22.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23. 본뇨종말처리 시설업
 24. 쓰레기처리 시설업
 25.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업
 26. 콘도미니엄업
 27. 사회복지, 문화, 스포츠시설의 분양, 임대, 관리업
 28. 가족호텔 분양, 임대, 관리업
 29. 도소매 유통시설의 설치, 운영, 임대, 관리업
 30. 창고업, 운수업, 주차장업
 31.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판매업
 32. 종합건설 기술연구개발 및 기술용역업
 33. 소방설비 공사업
 34. 오수정화 시설업
 35. 전시장 운영 및 이벤트사업
 36. 체육시설업
 37. 호텔숙박업 및 부대시설(회의실 포함)운영
 38. 전용회선임대업
 39. 난방시공업
 40. 미군납업
 41. 영화상영 및 극장운영업
 42. 시설유지관리업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이용한 540406-1*****

2002년 09월 27일	서울지방법원의선임허가	2002년 10월 17일	등기
2003년 03월 21일	사임	2003년 03월 29일	등기
2003년 03월 21일	취임	2003년 03월 29일	등기
2006년 03월 24일	중임	2006년 03월 29일	등기

사내이사 이용한 540406-1*****

2009년 03월 27일	중임	2009년 04월 07일	등기
2012년 03월 27일	중임	2012년 04월 10일	등기

사내이사 임창빈 610624-1*****

2009년 03월 27일	취임	2009년 04월 07일	등기
---------------	----	---------------	----

발급 확인 번호 4758-AANM-GIGD

00002120950784053100311108245301B9DABFEBC1F819670917 1 발행일: 2013/03/08

- 2/5 -

대법원

등기번호	015475
2012년 03월 27일 중임	2012년 04월 10일 등기
감사 이홍재 620427-1*****	
2009년 03월 27일 취임	2009년 04월 07일 등기
2012년 03월 27일 중임	2012년 04월 10일 등기
사회이사 민병태 540804-1*****	
2010년 03월 26일 취임	2010년 04월 06일 등기
사내이사 조용래 650103-1*****	
2011년 03월 30일 취임	2011년 04월 08일 등기
대표이사 조용래 65010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펜션 211-805	
2011년 03월 30일 취임	2011년 04월 08일 등기
대표이사 조용래 65010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032, 211동 805호(대치동, 한보미도펜션)	
2011년 10월 31일 도로명주소	2012년 04월 10일 등기

기타사항

- 명의개서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영업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영업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1994년 10월 21일 설립
2002년 4월 24일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
 - 2002년 4월 24일 서울지방법원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
2002년 5월 22일 서울지방법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출자전환 협약
 - 주식의 소각
 -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환사채

2002년 12월 31일 제40회 무보증 전환사채 전부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 무보증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의 권면총액 : 금0원정 < 2002년 11월 1일 사채의 총액 전부상환 >
 - 사채권의 금액과 권종 : ₩1,000,000,000원권 1종
 -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금액
 - 신주인수권행사기간
(1) 전환비율 : 각 신주인수권면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신주인수권청구

발급확인번호 4758-AANM-GIGD

00002120950784053100311108245301B9DABFEBC1F819670917 1 발행일: 2013/03/08

- 3/5 -

대법원

등기번호	015475
------	--------

시에는 그 권면합산금액)의 100%를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이를 절사함

(2) 행사가액 : 행사가격은 10,000원으로 한다.

(3) 전환가액의 조정

(가) 신주인수권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후 신주인수권행사가액 =

조정전신주인수권행사가액 \times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행사 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사와 사채권자의 협의에 의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 제(가)항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신원종합개발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1. 신주인수권 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03.6.17.)로부터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07.5.17.)까지로 한다.

주식 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1.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가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당사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거래법상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급확인번호 4758-AANM-GIGD

00002120950784053100311108245301B9DABFEBC1F819670917 1 발행일:2013/03/08

- 4/5 -

대법원

등기번호	015475
------	--------

5.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이상으로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나. 당해 주식의 권리액
 - 2) 제1호의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사성립연월일

1983년 05월 30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2008년 03월 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7-6(으)로부터 본점이전

2008년 04월 02일 등기

수수료 1,0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13년 03월 08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00002120950784053100311108245301B9DABFEBC1F819670917 1 발행일: 2013/03/08

발급확인번호 4758-AANM-GIGD

- 5/5 -

대법원